

#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402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2월 26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63번 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여 발의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 이유

-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은 다각도의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함. 이에 자살예방정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구성이 중요한데 제안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현행 조례에 전달체계구성과 관련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시장이 효과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여 제안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·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함(안 제5조제2항제7호)

나.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

다. 가지조의 조번호 수정(안 제10조)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7호 중 “가족 상담 및”을 “가족에 대한 심리상담·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.

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자살자의 <u>가족 상담 및 지원</u></p> <p>8. ~ 1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<u>제10조의1</u> (생략)</p>	<p>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가족에 대한 심리상담</u>     ▪ <u>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</u> --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2</u> (현행 제10조의1과 같음)</p>